

울 산 지 방 법 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4타경111772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2. 6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김도경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별지 기재와 같음			최선순위 설정	2015.09.24. 가압류		배당요구종기	2024. 10. 10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 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 분	점유의 권 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조사된 임차내역없음										
<비고>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1. 채매각. 매수신청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30%임. 2.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(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). 별지 2024.10.16.자 사실조회 회신서 기재와 같이 원상회복명령 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3.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주차장으로 이용 중임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4타경111772

[물건 1]

-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44-1
전 73m²

감정평가액

39,347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	2026.03.10	9,447,000	2,834,100
2회	2026.04.14	6,613,000	1,983,900
3회	2026.05.19	4,629,000	1,388,700
4회	2026.06.23	3,240,000	972,000

- 재매각. 매수신청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30%임
-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(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). 별지 2024.10.16.자 사실조회 회신서 기재와 같이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
-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주차장으로 이용 중임